



제267회 임시회
2008. 1. 24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화수 의원의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8년 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 재해보상(요양·장애·장제·유족보상) 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상의 수혜범위가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기준의 적용범위를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, 교육·훈련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홍보활동까지 확대적용
(안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 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소방관련 교육·훈련뿐만 아니라 홍보활동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재해보상의 수혜범위가 확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 은 타당하다고 사료됨